

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[강원연계]

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·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5차 공고합니다.

2026. 7. 1.
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: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지원유형 및 규모

- 지원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
- 지원규모: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% 지원

구 분		지 원 유 형	지 원 대 상
분쟁방어	초기대응	특허침해분석(FTO*분석)	정기
		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	

* FTO(Freedom-to-Operate):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

□ 지원 대상(이하 '지원기업'으로 통칭)

- 국내기업: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

지원 대상	• 중소기업 범위 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기업. 개인사업자 포함
-------	--

□ 2026년 주요 변경사항

변경사항	'25	'26
지원범위 확대	신규	• (신규)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-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
지원강화	• 국가전략기술·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	•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- '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%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(쿼터제) -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- (초기대응) 연 3회 지원 가능

2. 지원 상세

가.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

□ 분쟁방어 유형

(단위: 백만원, 건·회당 기준)

구분	유형	지원 내용	총사업비 (최대)	지원 조건 (필수서류)
초기 대응	특허침해분석	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	20	사전대비 전략 신청서
	사전대비 전략 A/B/C	특허침해 분석, 특허분쟁위험 대응*	35	

*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, 회피설계,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

나. 지원 범위

□ 유형·대상별 지원 비율

구분	정부 지원 비율 (총사업비 중)		수혜자 부담 비율	
	국비(보호원)	지방비(강원도)	현금	현물
소기업	50%	20%	10% 이상	20% 이하
중기업			20% 이상	10% 이하

*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3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

구분	정기모집(5차)
신청기간	'26. 7. 1.(수) ~ 7. 21.(화) 18:00
결과 통보	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
비고	-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-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,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·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-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

□ 신청 방법

-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 -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4] 참조
 -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가능
 - *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
- 신청기업(강원소재 중소기업)

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일반 신청		간소화 신청		제출방법
		필수	해당시	필수	해당시	
신청서	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	○		○		온라인 입력
간소화	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[붙임2-3]		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추가 제출 서류	1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 별첨4] 참조	○		서비스 이용		
	2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	○		서비스 이용		
	3. 대상제품 설명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	○		○		
	4. 대상제품 판매자료 [붙임1 별첨4] 참조	○		○		
	5. 수출 증빙자료(예정자료 포함) [붙임1 별첨4] 참조		○		○	
	6.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[붙임2-4] 참조 *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		○		서비스 이용 및 제출(해외)	
	6.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[붙임1] 참조	○		○		
	7. 가점 관련 증빙서류 [붙임1 별첨1] 참조		○		○	

○ 수행기관

【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

구분	제출서류	필수	해당 시	제출방법
수행기관 신청 서류	1.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	○		온라인 입력
	2. 산출내역서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)	○		
	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3개월 이내 *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(업력 확인용)	○		시스템 파일 업로드
	4. 사업수행 제안서 [붙임2-1] *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	○		

4. 세부 운영계획

가.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([붙임1] 참조)

□ 선정기준

- 신청기관: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
- 수행기관: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

참고 사항	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'지정 수행기관 유지·변경 요청서'를 요청하고,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.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
----------	--

□ 심사결과확인: 관리시스템(<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>) 내 '지원기업 협약관리'에서 확인

-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
나. 신청 시 유의사항(필독)

□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

- ① 휴·폐업 기업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(단,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)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)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·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(단, 대학·공공연은 지원가능)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□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

-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,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
- ③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선정 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)
-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
- ⑥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< 기업 비밀정보 보호 >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,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,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'비실명화' 후 제공할 수 있음

□ 기타 주의사항

○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

-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·해지하는 경우(최대 3년)
- 당해 연도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,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
 - *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
-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 참여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(영구)
 - *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 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
-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됨

- **(위탁정산)**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

*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,000원(VAT 미포함)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, 추후 별도 안내

- **(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조치)**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- **(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)**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·해지 가능
- **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**

- 정부지원금,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
-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지식재산처,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 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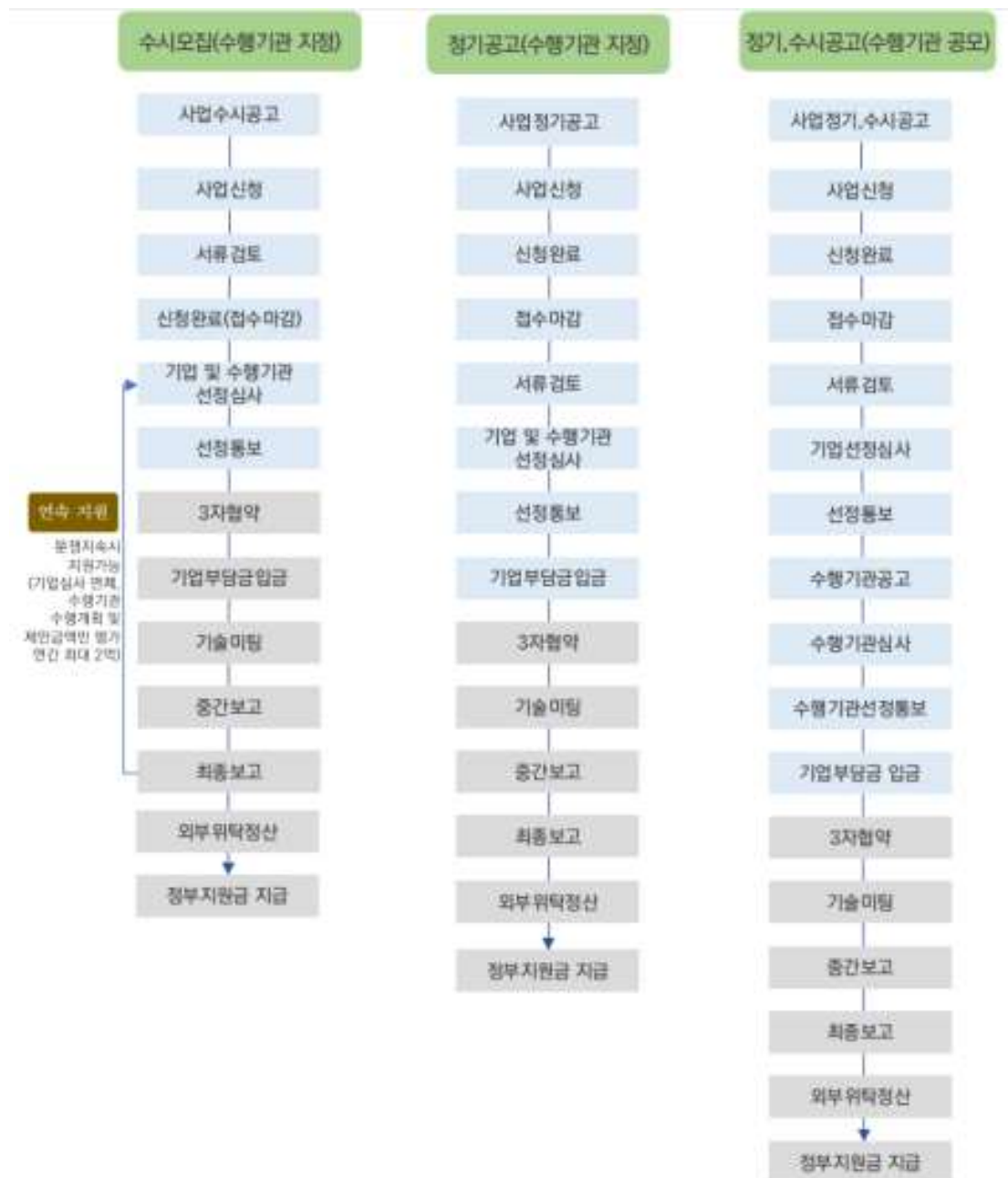
- **(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)**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,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(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)
- **(수행인력 변경)**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**3주 이내**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*(단, 변경 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)

*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

○ (외부자문 활용)

-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
-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(사무소)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

다.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



라.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

기관명	담당부서	구 분		
		세부 분야		담당자 연락처
한국 지식재산 보호원	특허분쟁 대응실	사업내용 (과업 문의 등)	IT분야	02-2183-5874
			기계분야	02-2183-5875
			전자분야	02-2183-5876
			화학분야	02-2183-5878
		행정	신청 및 선정절차	02-2183-5882~6
			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	02-2183-5885
			온라인 신청(시스템)	02-2183-5882
			정산 관련	02-2183-5886
		기타	이메일 문의	ipkoipa@koipa.re.kr
강원지식재산센터		강원연계 사업신청 문의	033-749-3333 mhjung@gwep.or.kr	

*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

통합지원 사업설명회	• (일시) 2026.3.5.(목) 14:00~17:00 • (장소)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(지하 1층)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붙임1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

[붙임2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

[붙임3]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

[붙임4]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